

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

의안 번호	32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8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평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선정대상: 모나 용평(주) 대표이사 신달순
- 근거규정: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 및 시행규칙
- 내용: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및 명예군민패 수여
- 공적사항
 - 상기인은 2017년 9월부터 모나 용평(주)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알파인 경기장, 올림픽선수촌 등의 시설물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이바지하고,
 - 군과 함께 발왕산 일대의 관광명소화에 노력하며 특히,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의 [2023 한국관광의 별] 수상에 기여하는 등 평창군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복지 등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음.

3. 참고사항

○ 신달순 모나 용평(주) 대표이사 프로필

	성 명	신 달 순(申 達 淳, Shin Dal Soon)
	생년월일	1956. 4. 28. (68세)
	거 주 지	서울특별시
학 력	<p>1994. 8.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(경영학석사)</p> <p>1999. 3.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(경영학박사)</p>	
주요경력	<p>'04. 4. ~ '05. 3. (주)용평리조트 대표이사</p> <p>'04. 10. ~ '12. 10.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대표이사</p> <p>'04. 10. ~ '16. 12.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이사</p> <p>'17. 9. ~ 현재. 모나 용평(주)* 대표이사 舊)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 앤 리조트</p> <p>'18. 9. ~ 현재. 파인리즈·세일여행사 대표이사(겸직)</p>	

○ 명예군민 선정 현황

구 분	합 계	재외동포	내국인	비 고
계	27	1	26	
1999년	2	-	2	김기섭, 황범식(텔런트)
2002년	1	1	-	이우현(가산 이효석의 자)
2008년	3	-	3	홍성태(이울의료봉사회 책임교수) 김명원(범우 대표이사) 윤재원(前 평창교육장)
2010년	2	-	2	강봉호(前 평창교육장) 양종렬(前 평창경찰서장)
2013년	1	-	1	최현길(前 평창교육장)
2014년	4	-	4	김진선(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) 나경원(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) 박성주(前 평창경찰서장) 최현숙, 이병진 부부(이웃돕기 기부채납) ※ 공동
2015년	1	-	1	김광식(前 평창경찰서장)
2016년	3	-	3	여형구(2018동계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) 조원진(제20대 국회의원) 백 진(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)
2017년	3	-	3	고창영(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) 황영조(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감독) 박지성(맨체스터유나이티드 멤버서더)
2018년	2	-	2	이선주(KT지속가능경영단장) 김기홍(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처장)
2019년	4	-	4	송승환(2018평창동계올림픽 개·폐회식 총감독) 박경식(사단법인 길림성조선족기업협회 사무국장) 최명규(2018평창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) 박은식(前 평창경찰서장)
2020년	-	-	-	
2021년	-	-	-	
2022년	-	-	-	
2023년	1	-	1	유승민(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)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"명예군민증" 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

제2조(수여대상자 요건)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(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)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.

1. 문화예술,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
2.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
3.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
4.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
5.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